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4,416,324	16,932,490
일반회계	543,670,388	16,310,112
특별회계	20,745,936	622,378
기타특별회계	20,745,936	622,378
상수도특별회계	4,126,185	123,78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82,856	38,48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49,711	28,491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3,188,790	95,664
주차장특별회계	216,120	6,4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2,120	1,564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800,000	264,000
하수도특별회계	2,130,154	63,90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38,11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